



변경일 : 2021. 9. 1. (송달료 1회분: 5,200원)

추납대상( <b>사건번호 기재</b> )	예납대상 (2人 기준요금)(원고,피고 각1인일 경우)
○ 보정명령서상 추납요청시 - 법원에서 납부요청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. (송달료납부서에 <b>사건번호</b> 와 원고성명을 적으십시요!)	○ 민사소액사건(가소): 104,000원(10회) (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) ○ 민사제1심단독사건(가단): 156,000원(15회) (소가 2천만~1억원미만) ○ 민사제1심합의사건(가합): 156,000원(15회) (소가 1억원이상) ○ 민사항소사건(나): 124,800원(12회) ○ 민사항소사건(다): 83,200원(8회) ○ 지급명령신청(독촉)사건(차): 41,600(4회) ○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(차): 10,400원 ○ 민사조정사건(머): 52,000원 ○ 부동산 경매사건(타경): (이해관계인 + 3) x 52,000원 ○ 민사항고사건(라): 52,000원(5회) / 재항고사건(마): 52,000원(5회) ○ 기타집행(타기): 31,200원(추심, 전부) ○ 부동산인도명령: 31,200원(소유자납부) / 31,200원(임차인납부)
	<ul> <li>부동산 가압류/ 가처분 신청사건(카단/카합) - 31,200원(3회)</li> <li>부동산 가압류/ 가처분 이의신청, 결정취소 - 83,200원(8회)</li> <li>우표를 첨부하는 사건         <ul> <li>부동산 가압류해제 2회분 / 채권가압류해제 2회분</li> <li>말소등기 2회분 / 야간집행 2회분</li> </ul> </li> <li>채권, 동산 가압류/ 가처분사건(카단/카합) - 52,000원</li> <li>담보취소, 담보제공, 담보물변경(카담) - 20,800원</li> <li>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(카담) - 31,200원</li> <li>공시최고 신청사건(카공) - 15,600원(당사자수*3회)</li> <li>제소전화해 신청사건(자) - 41,600원</li> <li>재산명시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, 명부등재말소사건(카명) - 52,000원</li> <li>판결(결정)정정, 제소명령, 증거보전, 강제집행정지 특별대리인선임사건, 해방공탁사건(카기) - 20,800원</li> </ul>
	<ul> <li>○ 가사제1심소송사건(드합,드단): 124,800원(12회)</li> <li>○ 가사항소사건(르): 104,000원(10회)</li> <li>○ 가사상고사건(므): 83,200원(8회)</li> <li>○ 가사항고사건(브): 31,200원(3회) / 재항고사건(스): 52,000원(5회)</li> <li>○ 가사특별항고사건(으): 20,800원(2회)</li> <li>○ 호적정정/개명신청사건(호파): 31,200원(6회, 1인)</li> <li>○ 성본창설사건(호파): 20,800원(4회, 1인)</li> <li>○ 성본장설사건(호파): 가족인원 x 송달료 20,800원</li> <li>○ 이혼사건(드단,드합,느단,느합,즈단,즈합): 124,800원</li> <li>※ 관련인 1인 추가시 해당요금의 1/2 만큼씩 더함.</li> </ul>
송달료 대신 <b>우표로 법원에 납부</b> 하는 경우 <b>1회 4,980원</b>	송달료 대신 <b>우편환증서로 납부</b> 하는 경우